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32774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3277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1037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김민정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10374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 “않은 점” 뒤에 “, 당시까지 D은 원고의 요청으로 설계변경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이 설령 D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이 주택 준공기간 내에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이상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위 이행불능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급부(원고가 지급한 계약금)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사회통념상 D에게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손윤경, 판사 정진우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위험부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모두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소송물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아니다.